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0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박균택 · 김현정 · 김원이
어기구 · 허 영 · 허성무
이상식 · 김영배 · 박 정
홍기원 · 박상혁 · 주철현
양부남 · 조인철 · 정준호
박지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

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을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u>이 법 시행 후 최초로</u> <u>판결이 선고되는 사건</u>의 판결 서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례) ----- ----<u>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u> <u>이 선고된 사건</u>----- -----.